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04년 7월 5일
- 다. 상정 일자
 - 제230회 정례회
 -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4. 7. 15) 상정,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 가. 제안 이유
 - 도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 골자
 - 시상분야는 종합대상과 부문별대상(기업경영, 기술개발, 수출, 노사화합)으로 함(제2조)
 -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도내 기업으로 함(제3조)

- 대상심사를 위하여 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위원장 부지사, 위원 15인이내) 심사함(제4조)
- 대상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및 시장군수가 추천 (제6조)
- 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지급(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 상 업)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은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 본 조례는 충청북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있는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와의 중복여부와 시상금 규모에 대하여 재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2조의 시상분야에는 종합대상과 4개부문의 부문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업의 기술혁신, 노사화합 등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에 대한 시상과 수상기업에 대한 특전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 제3조의 대상후보자를 중소기업으로 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목적달성과 수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가. 수정이유

- 대상후보자를 중소기업으로 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목적달성과 수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수상 대상후보자를 전체 중소기업에서 중소제조업으로 한정 함.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별첨

-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한수정동의

제안년월일 : 2004년 7월 15일

제 안 자 : 정윤숙 의원 외

□ 제안 이유

- 대상후보자를 중소기업으로 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목적달성과 수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수상 대상후보자를 전체 중소기업에서 중소제조업으로 한정 함.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를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대상후보자).....	제3조(대상후보자).....
.....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분야) 대상 시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대상 : 경영 기술 수출 및 노사 등 각 부문 종합 우수업체
2. 부문별 대상
 - 가. 경영대상 : 경영능력, 경영성과, 복리후생 및 투자율 등이 우수한 업체
 - 나. 기술대상 : 연구성과, 기술보유도,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 등이 우수한 업체
 - 다. 수출대상 : 수출증진,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 등이 우수한 업체
 - 라. 노사화합대상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노사화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 업체

제3조(대상후보자) 대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안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추천 및 심사) ① 대상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장 군수가 추천하되, 추천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대상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시상) ① 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 와 시상금을 수여한다.

- ② 제1항의 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홍보 등) ① 대상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② 대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규정 및 충청북도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발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가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타. 중소기업의 육성

제15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